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경우
2. 감염병의 진단 목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의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 나.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 다.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

제14조의4(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은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영업장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의6(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및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의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점검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39조의3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u>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경우</u> <u>2. 감염병의 진단 목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의 경우</u> <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u> <u>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u> <u>나.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의 보전기관</u> <u>다.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u>

<신 설>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
조·치료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
목원

제14조의4(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
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
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
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
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과충
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
우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은 소유주
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
우(과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
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신 설>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의6(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2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u>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및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u> <u>1. 점검의 목적</u> <u>2. 점검의 기간 및 장소</u> <u>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u> <u>4. 점검의 범위 및 내용</u> <u>5. 제출할 자료</u>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illegible]

1. ~ 25. (현행과 같음)

26.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물 영업에 관한 사무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영업정지 일수} \times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금액, 월별 매출금액 또는 일수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10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5.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22조의10 제1항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